

의안번호	제 546 호
의결 연월일	. . . (제 회)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이의영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0년 10월 5일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의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46
----------	-----

발의연월일 : 2020년 10월 5일  
발 의 자 : 이의영, 박형용, 이숙애  
이상욱, 장선배, 허창원  
송미애 의원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을 삭제하고, 2019년 5월 조직개편을 반영해 부서장 명칭을 변경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서장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 수정 (안 제6조의2)

- “여성정책관” → “여성가족정책관”

나.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되는 ‘직원 정년기준에 관한 사항’ 삭제  
(안 제8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조례안예고 :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20-81호

다. 협 의 : 여성가족정책관

라. 비용추계 : 해당 없음

##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 중 “여성정책관”을 “여성가족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2회에 한정하여”를 “두 차례만”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잔임 기간으로”를 “남은 임기로”로 한다.

제8조의제1항 중 “자”를 “사람”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지사가 임용하며, 여성가족부 운영지침상의 정년기준을 준용한다”를 “도지사가 임용한다”로 한다.

제14조 중 “제반사항”을 “모든 사항”으로 한다.

제21조 중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을 “시행에 필요한”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의2(운영위원회) ①·② (생략)</p> <p>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 <u>여성정책관</u>, 원장으로 한다.</p> <p>④ (생략)</p> <p>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2회에 한정하여</u>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u>잔임 기간으로</u> 한다.</p> <p>⑥ ~ ⑨ (생략)</p>	<p>제6조의2(운영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여성가족정책관</u> -----.</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 ---- <u>두 차례만</u> ----- -----.</p> <p>---- <u>남은 임기로</u> ----.</p> <p>⑥ ~ ⑨ (현행과 같음)</p>
<p>제8조(임용) ① 원장은 청소년 건전육성과 상담·지도 등에 능력과 자질을 갖춘 <u>자</u> 중에서 도지사가 임용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1회에 한하여</u> 연임할 수 있으며, 비상근으로 한다.</p> <p>② (생략)</p> <p>③ 팀장이하 직원은 원장의 추천에 따라 도지사가 <u>임용하며, 여성가족부 운영지침상의 정년기준을 준용한다.</u></p> <p>④ (생략)</p>	<p>제8조(임용) ① ----- ----- ----- <u>사람</u> ----- ----- <u>한 차례만</u> 연임할 수 있고,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임용한다.</u></p> <p>④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14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진흥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진흥원운영과 예산·회계, 비품관리 등 <u>제반사항</u>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p>	<p>제14조(지도·감독) ----- ----- ----- --- <u>모든 사항</u>을 ----- ---.</p>
<p>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u>시행에 관하여 필요한</u>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1조(시행규칙) ----- <u>시행에 필요한</u> ----- ---.</p>

## 관계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군·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지도·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
2. 지역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3.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지원
4.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홍보와 지원
5.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6.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7.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에 대한 지원
8. 제9조의4에 따른 정보공개에 대한 지원
9. 그 밖에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활동진흥원과 연계·협력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관련 사항, 성교육 전문기관에 두는 종사자 등 직원의 자격 및 설치기준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